

482-110 경기도 양주시 삼승로 31 (전화) 070-7797-2583 (문의) news.pcis@daum.net
대표 손영준 <http://cafe.daum.net/pcis>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NGO담당기자
발 신 : 정보화사회실천연합
문 의 : 손영준 T. 010-8677-9515
작 성 일 : 2013. 03. 28(목)
제 목 : [보도자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실태조사 (총 4페이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거북이 걸음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2년, 공공기관 288개 중 39%(111기관) 아직도 뒷집
주무부처 관리·감독 문제없나**

1.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은 금년으로 제정 된지 2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2. 이에 정보화사회실천연합(이하 정실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288개 공공기관'의 대표 홈페이지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제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하여 2013.03.01.부터(20일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 실태조사는 외부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사항 중 기술적 조치에 속하는 **전송구간 암호화(보안서버구축, SSL)** 및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이하 **대체가입수단**) 준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4. 관련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11.9.30]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행정안전부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

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방법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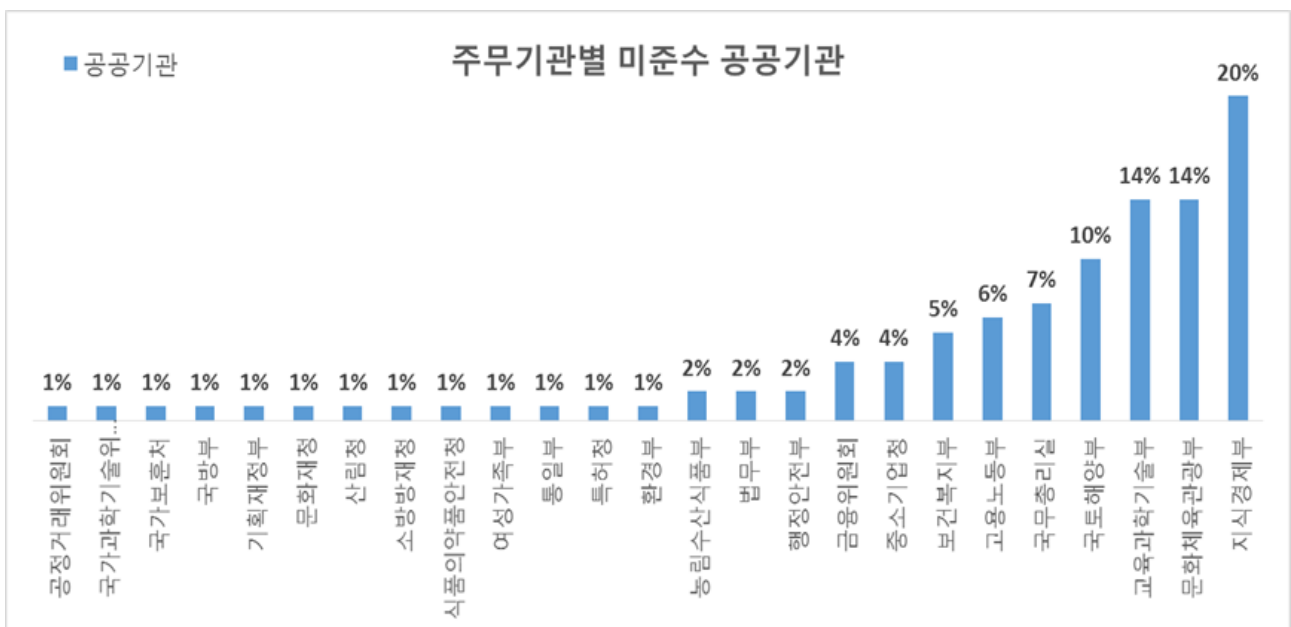
[별표 2] [시행일:2012.3.30] 제2호자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이 상 위 반
자.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5호	600	1200	2400
차. 법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6호	600	1200	2400

5. 조사결과

가) 전체 288개 기관에서 한 항목이라도 미 준수한 기관은 111개 기관으로 전체 39%를 보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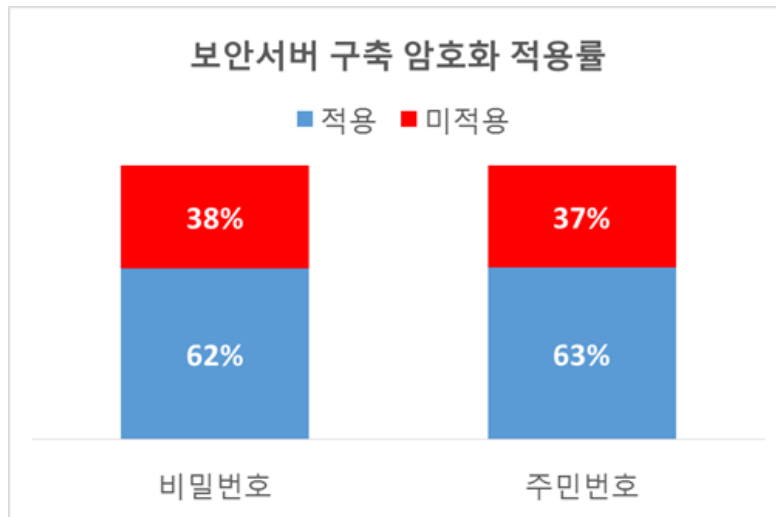
<도표 1. 주무기관별 미 준수 공공기관 비율>



나) 조사대상 288개 기관 중 189개 기관이 '로그인'기능 있으며, '비밀번호'의 암호화 미적용이 38%(71기관), 155개 기관은 회원 가입시 '주민번호' 암호화 미적용이 37%(58기관)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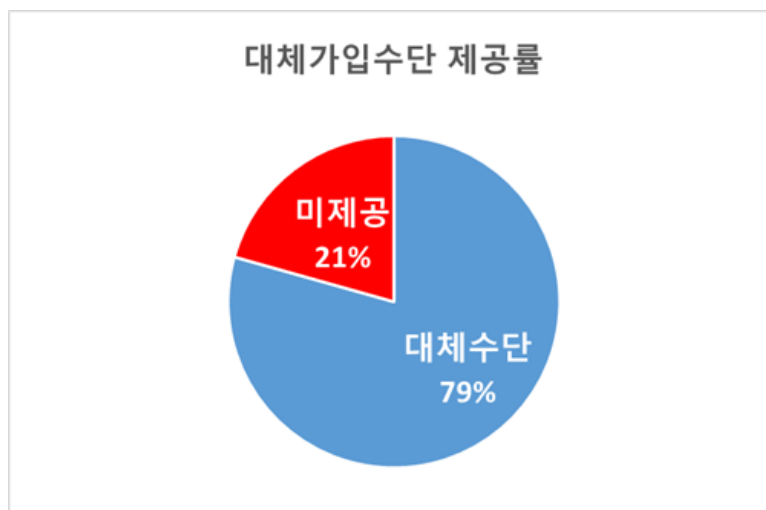
- 2년이란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도 미 준수율이 약 40%에 가까운 것을 보면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표 2. 보안서버 구축 암호화 적용률>



다) 조사대상 288개 기관 중 155개 기관이 주민번호를 활용하고 있으며, 주민번호 '대체가입수단' 제공에서는 21%(32기관)의 공공기관은 미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표 3.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제공률>



6. 기관의 대표사이트는 대부분 해당기관을 소개하는 홈페이지로서 전체 288개 공공기관 중 26개 기관만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았으며, 262개 기관은 회원가입 또는 실명인증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않는 현실에 대하여 해당 주무

기관이 산하공공기관에 대하여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단적인 사례이며, 또한 누가 누구에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라고 할 수 있는지 행정기관에 되묻고 싶을 따름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이미지

“자물통 그림”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인터넷 사용시 ‘자물통 그림’을 확인하시면서 이용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개인정보
 ID : user
 비밀번호 : abcde
 주민번호 : 701010-1234567

SSL 미사용시
 http://abc.com
 해킹 가능(개인정보 유출)

보안서버 미적용

웹브라우저 사용자

SSL(전송시 암호화)

SSL 사용시
 https://abc.com
 해킹불가능

개인정보(암호화)
 ID : saFG352fd3
 비밀번호 : dFg67hr54tg37
 주민번호 : d34gtD58jmsah

보안서버 적용